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19 선고 2021가단113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21. 6.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7. 1. 접수 제80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9. 23. D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이하 D 주식회사의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E의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6. 1. F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시 F 주식회사는 2021. 1. 22.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은 2016. 4. 29.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6. 1.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은 1972. 7. 3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C, H, I, J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7.경까지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21. 6. 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21. 9.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의 원금은 5,527,160원, 이자는 12,703,998원이며,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의 원금은 2,695,769원, 이자는 3,054,431원이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 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로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C의 채무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나 부부공동 소유로 인식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없었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3,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중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배우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상속재산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이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11 (=1/2 \times 2/11)$ 범위 내이다.

① 피고는 1972. 7. 31.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네 명의 자녀를 두었고, 성년이 된 네 명의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등 전부 독립시킨 후에 2021. 6. 1.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49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피고는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서 근로하여 왔고, 망인은 전업주부로서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③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매수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와 망인의 아들인 H이 그 대출원리금이나 피고와 망인의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하며 부양하여 왔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이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전업주부로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부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부공동 소유에서 나아가

자신의 단독소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C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1 지분을 가진 C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C를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1942년생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노부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피고나 피고의 자녀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C 또한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③ 그 외에 1942년생인 피고가 C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150,000,000원 중 C의 상속지분(1/11)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고려하면, C가 포기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1지분은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11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앞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선의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의 악의를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목 록

[건물]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조표

목조와즙 단층주택

40.17㎡

[토지]

부산광역시 서구 대 93㎡

[토지]

부산광역시 서구 대 19㎡

